

학생연구자 지원규정

제2차개정 2023-01-3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, 학생인건비를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여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학생연구자 근로계약 체결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2.04.25>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생연구자”란 학생신분으로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에게 논문 작성 등을 지도받고 연구에 참여하며 연수를 받는 자를 말하며, 근로UST연구학생, 근로학연연구학생, 근로연구학생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2.04.25>
2. “연구책임자”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.

제4조(연구원의 의무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 <개정 2022.04.25>
2.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
3.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 관리
4.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
5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,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 <개정 2022.04.25>
6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미지급 방지
7. 기타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2.04.25>

제5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한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<개정 2022.04.25>
2. 학생연구자에 대한 성실한 지도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의 준수 <개정 2022.04.25>
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공정한 관리 <개정 2022.04.25>
4. 학업·연구활동 보장, 처우, 졸업요건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과 운영을 위한 노력
5. 학생연구자 운영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

수립과 적정 학생연구자 확보를 위한 노력 <개정 2022.04.25>

6. 기타 연구책임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

제6조(학생연구자의 의무)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22.04.25>

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
2.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 준수
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,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즉시 통보
4. 기타 학생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 <개정 2022.04.25>

[제목개정 2022.04.25]

제7조(연구참여확약 체결) 원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에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의 별지 서식을 활용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. 다만, 원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4.25, 2023.01.30>

1. 연구 주제 및 분야, 주요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역할,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
2.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
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명시 금지

제8조(연구참여확약 변경) 원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4.25>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<개정 2022.04.25>
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<개정 2022.04.25>
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제9조(학업 및 연구권 보장)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,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 <개정 2022.04.25>

③ 학생연구자는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4.25>

제10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학생인건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서 정하는 최소금액 이상으로 하되,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

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하며,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·기술료 보상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③ 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④ 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학생연구비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<신설 2022.04.25>

제11조(학생인건비 관리) 연구원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04.25]

제12조(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)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연구원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<2022.04.25>]

제13조(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) ① 임직원은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③ 연구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④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⑤ 연구원은 학생연구자가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⑥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,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학생연구자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감사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개인평가 반영,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

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>

[제목개정 2022.04.25]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<2022.04.25>]

제14조(자체점검) ① 연구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의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4.25, 2023.01.30>

② 연구원은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<2022.04.25>]

제1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[종전 제14조에서 이동 <2022.04.25>]

부칙 <2021.07.26>

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04.25>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01.30>

이 규정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